#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17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양부남・이기헌・이건태

박민규 • 이용선 • 정진욱

허성무 • 박지원 • 권향엽

박홍배 • 박해철 • 이성윤

강준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한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 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
	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②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2,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제6호의3 및 제6호의4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 ③ ~ ⑤ (생 략)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 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②·③ (현행되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제74조(벌칙) ①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
지 책임자)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
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②·③ (현행과 같음)
山71ス(出え)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7. (생 략) ② (생 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7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물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
<u>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u>
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를 게시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u>
<u>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u>
<u>조제1항제3호의2</u>
,